

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(신호, 과속)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7월 31일

남 동 구 청 장

1. 행정예고명

-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」

2. 행정예고 및 목적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초등학교 외 6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(신호, 과속)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, 목적 및 주요 내용(설치 위치)을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3. 행정예고의 대상(7개 학교, 12개소)

연번	학교명	설치위치	수량	장비	설치시기	비고
1	은봉초등학교	통학로	1	다기능 (후면)	2023. 9.~11.	
2	원동초등학교	통학로	2	다기능 (후면)	2023. 9.~11.	
3	정각초등학교	통학로	1	다기능	2023. 9.~11.	
4	한빛초등학교	통학로	2	다기능	2023. 9.~11.	
5	만월초등학교	통학로	2	다기능	2023. 9.~11.	
6	사리울초등학교	통학로	2	다기능	2023. 9.~11.	
7	소래초등학교	통학로	2	다기능	2023. 9.~11.	
합계	7개 학교		12			

※ 사업 위치도 : 붙임 참조

4. 공고방법 : 남동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amdong.go.kr>)

5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3. 7. 31. ~ 2023. 8. 21.(21일간)

7. 의견제출

-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간 : 2023. 7. 31. ~ 2023. 8. 21.(21일간)
- 의견제출 서식 : [붙임2] 서식 참조
-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
남동구청 교통행정과(교통시설팀)
 - 전 화 : 032)453-2963 / FAX : 032)453-2899
- 기타사항
 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.

【붙임 1】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

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

1. 은봉초등학교 일원 (논현119안전센터→동방초등학교)



2. 원동초등학교 일원 (소래해넘이전망대→소래포구해오름광장)



3. 원동초등학교 일원 (소래포구해오름광장→소래해넘이전망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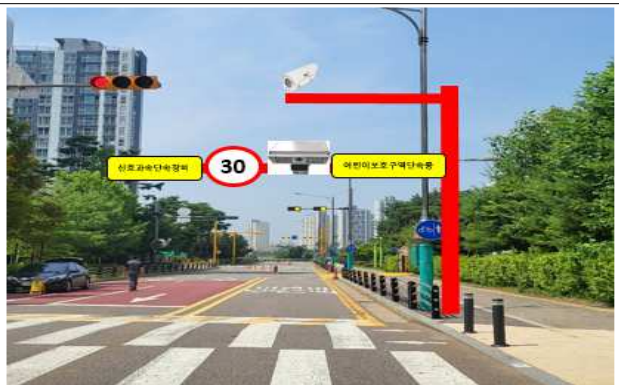
4. 정각초등학교 일원 (정각사거리→모래마을사거리)



5. 한빛초등학교 일원 (서창센트리스아파트→에코에비뉴아파트)



6. 한빛초등학교 일원 (서창퍼스트뷰아파트→서창남순환로160번길)



7. 만월초등학교 일원 (남동세무서→구월지구대)



8. 만월초등학교 일원 (구월지구대→남동세무서)



9. 사리울초등학교 일원 (소래해넘이전망대→인천고잔고등학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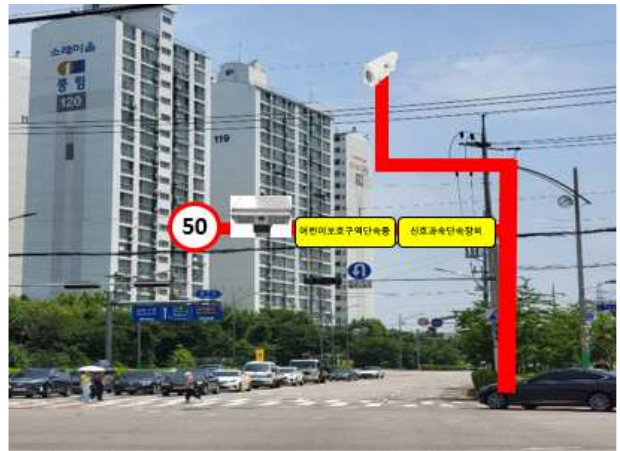
10. 사리울초등학교 일원 (인천고잔고등학교→소래해넘이전망대)



11. 소래초등학교 일원 (소래포구사거리→소래포구역)



12. 소래초등학교 일원 (소래포구역→소래포구사거리)



※ 화살표는 차량 주행방향임.

[붙임2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